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시행 2021. 10.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2021. 10. 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4

I.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항 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310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단위: 만원)

항 목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
퇴직급여등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퇴직급여등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됨

II.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